

농 촌 진 흥 청

주 의 요 구

제 목 ○○○○ 이용 상품화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요건 미검토

기 관 명 부산광역시

내 용

부산광역시 ○○○○센터에서는 벼재배 농가의 6차 산업화로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창조농업 실현을 위하여 “○○○○○ ○○○○ ○○ ○○○ ○○ 시범사업”의 사업대상자로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의 규정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공통지원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공통지원요건

가. 총출자금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그런데도 부산광역시 ○○○○센터에서는 “○○○○○ ○○○○ ○○ ○○ ○○○ 시범사업(사업비 300백만원)”의 사업 대상자로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하면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법인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지 않았다.(법인체 설립일이 2016.1.26.로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체에 해당되지 않음.)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주의] 향후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